

성희롱 사건의 원고측 고소 용인, 피고 변재창(卞在昌) 및 피고측 교단은 손해배상 책임
피고변재창 (卞在昌) 의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

2014년 5월 27일

성명문

「모루드개의 모임」

(종교법인 『小牧者訓練会』 에 의한 피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대표 가토 고이치 (加藤光一)

2014년 5월 27일, 도쿄(東京) 지방재판소 민사 제45부(야마다 아키라[山田明]재판장)은, 피고 변재창(卞在昌) 및 피고의 종교법인 「小牧者訓練会」 (이하, 「피고 교단」 이라고 말한다.) 에 대해,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원고인 4명의 고소를 인정하며 그 중 2명에 대해서, 각각 금액 330만엔씩, 또 다른 2명에 대하여는 각각 440만엔씩, 합계 1540만엔의 손해 배상금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 피해자인 남성원고의 호소는, 유감스럽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및 피고교단에 의한, 성희롱 재판 및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의 괴롭힘】 재판에 있어서 원고측의 피해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이 공개 등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고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변재창(卞在昌)에게 지난 2011년 5월 20일에 선고된 준강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는, 여성피해자 한 명에게만, 2007년 2월 17일이라는 특정한 하루에 한해서 준강간의 사실 유무가 쟁점이 되었고, 형사사건의 성질 상,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제한이 있는 등의 이유로, 그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의 민사판결에서는, 여성피해자 4명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변재창(卞在昌)으로부터 성희롱(외설)행위를 받아 온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가 용인된 점에서, 저희들은 이번 판결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에 의해 성희롱 피해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인권이 지켜지게 된 것을 저희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간 원고들에게 생긴 마음의 상처도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성희롱 재판 및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권력의 괴롭힘】 재판은, 모두 피고교단의 내부에서 일어난 꺼림칙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공통되는 문제점은,

(1) 담임목사인 피고변재창(卞在昌)이, 자기자신을 영적 지도자로서 그 절대적 권위를 설파하는 권위주의적인 교회정치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담임목사나 상위교역자에게는 절대로 복종해야 하며, 그들의 실수를 절대로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맹신하게 만든 것.

(2) 그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서 담임목사나 상위교역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것.

(3) 담임목사나 상위교역자에게 정당한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피해자에게 굳게 믿게 하고, 역으로 교회내부에서 정당한 사정을 호소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풍토를 조성한 점, 그럼으로써 피해사실을 은폐해왔던 것. 이 모두, 사건발생의 배경과 원리가 공통됩니다.

이번의 판결로 피고 변재창(卞在昌) 뿐만 아니라 피고교단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조직으로서의 교단의 자세가 탄핵된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변재창(卞在昌) 및 피고교단은, 항소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사죄하고, 속죄로서 그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껏 피해를 받고 오랫동안 신음해 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의 치유와 권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판소가 사건이 일어난 배경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지극히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정에서 진지하고 끈질기게 원고들의 인권을 옹호해 주신 변호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와 헌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지탱해주신 지원자 및 여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권력의 괴롭힘】 재판에 대해서는, 호소가 기각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항소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겁니다.

저희들은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목사의 권위를 강조한 나머지 상기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일본의 일부 교회들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널리 구제되어, 그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 나갈 것입니다.

니다.

같은 피해를 받으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조차 제약되어 아직도 피고교단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각성하고, 자신의 자유의사로 신속하게 피고교단에서 떠나시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